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지원기관

사단법인 한국어린이놀이시설협회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2014년도 연간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자 교육일정 안내

1. 어린이 안전문화 환경 정착을 위해 힘써주시는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 아래 법령과 관련된 안내입니다.

- 가.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이하 “법”) 제18조(어린이놀이시설안전관리사업의지원)
- 나. 법 제20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0조(안전교육)

3. 위 규정에 따라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관리자는 시설을 설치자로부터 인도받은 날부터 6개월 또는 안전관리자가 변경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지원기관에서 실시하는 안전교육을 받아야 하며, 이후 2년에 1회 이상 재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4.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지원기관인 우리 협회의 2014년도 연간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자 교육일정을 붙임과 같이 통보해드리오니, 각 관리감독기관의 장께서는 위 사항을 참조하시어,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관리자가 법정 기간 내에 안전교육 의무를 이행할 수 있도록 안내 부탁드립니다.

붙임 : 2014년도 연간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자 교육일정 1부. 끝.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20조 관련

2014년도 연간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자 교육일정

○ 정기일정

교육지역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서울특별시	■	■	■	■	■	■	■	■	■	■	■	■
부산광역시		■		■		■		■		■		■
인천광역시	■		■		■		■		■		■	
대구광역시		■		■		■		■		■		■
광주광역시	■		■		■		■		■		■	
대전광역시		■		■		■		■		■		■
울산광역시	■				■				■			
경기고양시		■				■			■			
경기수원시				■				■				■
경남창원시			■				■				■	
전북전주시			■				■				■	
충남천안시			■				■				■	
강원원주시					■						■	
강원춘천시		■						■				
경북안동시			■						■			

※ 위 일정은 기후 또는 기타여건에 따라 다른 시기로 변동될 수 있습니다.

※ 도시 정렬기준은 놀이시설 수량에 따른 내림차순으로써 도시의 규모 및 인구수와는 상관관계가 없습니다.

○ 임시일정

- 위 정기일정 외에 지자체 또는 교육청의 요청에 따라 교육일정 및 지역이 추가될 수 있습니다.
- 매달 첫째주에 2개월분의 교육일정이 홈페이지 또는 안내공문을 통해 확정 공고됩니다.
- 임시일정 신청은 교육예정일 2개월 전에 우리 협회 안전교육담당자와 협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지원기관
한국어린이놀이설협회